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에 대한 법적·제도적 고찰

이 아 람[†]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 조교수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과 관련하여 내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상담사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상담 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및 해당 문제의 유해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앞서 1980년대에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미국의 판례를 살펴보고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각 주의 법률 규정을 검토하였다. 미국 판례는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이 현상으로 인해 상담사-내담자 관계가 상징적인 부모-자식 관계의 양상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상담사와의 성적 관계는 내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성적 착취한 상담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형사처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의무, 면허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상담사에 대한 처벌, 내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국가 공인 심리상담 자격 제도의 도입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 미국 판례, 미국 주 법률, 내담자 보호방안, 상담사 제재조치

[†] 교신저자 : 이아람,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05006)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Tel : 02-3408-1982, E-mail : leeyalan@sejong.ac.kr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여성 내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담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유지혜, 2019). 이 사건은 상담사와 성인 내담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관계와 관련하여 상담사의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피보호자간음 등의 행위를 인정한 형사 판결이다. 근래에 상담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상담사, 치료자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내담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기사화되어왔는데(남은주, 2016; 박지윤, 2019),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린 법원의 입장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다만, 2020년 4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위 사건 상담사에 대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은 집행유예로 그 형을 감형하였다(조경진, 2020). 본 기사에 따르면 항소심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임을 인정하였고, 상담사에게 이전에 강제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에 대해 상담사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이 되었다는 점은 상담사의 성적 접촉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문상담이라는 영역 전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입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

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상담학과와 실무자들은 내담자를 잠재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상담사의 윤리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담 전문가들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상담정책포럼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상담 관련 법률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문상담 및 상담사의 자격과 수행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고, 특히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상담윤리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한국상담심리학회, 2019; 한국상담학회 2019), 이러한 윤리 규정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내담자에게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가 올바르게 제공되고,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는 피해로부터 내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할 것이다(이상민, 2020).

다만 현재로서는 전문상담 관련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담자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상담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임주환(2019)은 “일차적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이 심리상담가-내담자 관계에서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 피해자들의 저항이 무력화되거나,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기 쉽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p. 31).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 기관이 내담자를 보호하는 적

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학과 실무가들이 상담 관계의 특수성, 상담사-내담자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의 유해성, 내담자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등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 등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상담 과정 중에 발생하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단순히 성인 대 성인 사이의 자유로운 관계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상담이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인 상담사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찾는 내담자 사이에는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Allen, 1996; Galletly, 1993; Kagle & Giebelhausen, 1994)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성적 접촉은 내담자의 신뢰를 저버릴 뿐 아니라 내담자에게 다양한 피해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담 관계의 특수성과 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먼저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접촉에 대해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이유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한다. 그 후, 우리나라에 앞서 상담사와 내담자의 성적 접촉에 대해 1980년대에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미국의 논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상담 관계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검토한 미국의 판례를 살펴보고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미국 법률 규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문상담을 위해 앞으로 법적·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의 범위로 한정된다. 먼저 성인 내담자만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법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내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보호 규정이 없는 성인 내담자에 대한 상담사의 성적 접촉에 논의를 한정하기로 한다. 또한 본고는 상담 관계 진행 중에 발생한 성적 접촉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상담 관계 종료 이후에 발생하는 성적 접촉 또한 내담자에게 유해할 수 있고 상담윤리 상 금지되어 있지만(한국상담심리학회, 2019; 한국상담학회 2019; Moleski & Kiselica, 2005; Wheeler & Bertram, 2015), 종결 이후의 시간적 범위의 제한, 상담사에 대한 처벌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전문상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심리상담 또는 전문상담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은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상담 영역의 확장은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도적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이상민, 2020). 현재 다양한 법률에서 ‘상담’ 또는 ‘심리상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담이 무엇인지 그 목적과 양태 등을 명확히 정의내리고 있지 않다. 또한 극소수의 상담 관련 자격, 예컨대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상담사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담자격은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격소지자들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김인규, 2018; 이상민, 2020).

전문상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의 부재로 인해 상담 서비스의 수요자인 내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적 접촉일 것이다. 임주환(2019)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내담자를 강제추행한 교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던 판결을 소개하는데,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교수가 “상담할 만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명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나39 판결). 이는 일반인들의 경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을 시사할 뿐 아니라, 실제로 충분한 전문 자격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서두에 언급했던 상담사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성적 행위가 치료의 일환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담사의 강요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남은주, 2016; 박지윤, 2019).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은 상담윤리 상 이견 없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행위이기는 하지만(한국상담심리학회, 2019; 한국상담학회 2019),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상담의 과정과 실재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상담사를 전문가로서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내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990년부터 소비자보호위원회(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전문상담은 절대 성적 접촉을 포함하지 않는다(Therapy never includes sexual behavior).”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상담사의 성적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내담자들의 반응, 내담자의 권리 및 보호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2019). 이처럼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내담자들은 상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공개적인 상담의 과정과 개입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성적 접촉을 상담의 일환으로 오해할 수 있고, 이는 내담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상담사의 성적 접촉으로 인해 내담자가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해당 상담사에 대한 제재나 피해자 구제방안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언급할 상담관계의 특수성, 즉 전문적인 상담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 상담사에 대한 내담자의 의존성 또는 전이 현상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담사와 성인 내담자 사이의 합의된 성적 접촉은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과 성인 사이에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한 동의를 존재했는지 여부(김태명, 2018; 유주성,

2016), 또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폭력과 협박(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등), 위계·위력(형법 제302조, 제303조 등) 등의 범죄성립요건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담사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담자의 심리적·정신적 의존 또는 전이 현상을 악용하는 것이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적 접촉을 하는 상담사에 대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임주환, 2019).

내담자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한 쉽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상담사에게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상담사)의 고의나 과실 및 책임능력,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김준호, 2018), 이때 피해자(내담자)가 가해자(상담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또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김준호, 2018). 피해자인 내담자가 상담사의 고의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설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阻却), 즉 특별한 사유로 인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보고 있어서(김준호, 2018), 성적 접촉에 대해 외관상으로 내담자의 동의가 존재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 민법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계약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결함 여부에 대한 판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요건, 피해자의 구제수단 등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김중길, 2018). 전문상담의 경우, 상담사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상담 서비스의 내용 및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내담자가 그러한 상담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민사상 보호 또한 용이하지 않다.

물론 상담 관련 학회 및 기관에서 통용되는 윤리 기준은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윤리를 위반한 상담사에 대해 학회 및 기관 차원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상담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허와 달리 자격의 경우에는 자격의 유무가 직무의 수행 가능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신용철, 2002; 하명호, 2019). 즉 상담 관련 자격증을 애초에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나, 학회의 제재조치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도 상담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상담 행위를 했을 경우, 비윤리성을 검토하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제재 자체가 어려워진다. 또한 윤리적 기준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상담사를 엄격히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내담자를 구제할 방법도 제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은 단순히 두 성인 사이의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전문상담이라는 특수한 서비스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로 이해해야 한다.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상담이라

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내담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전문상담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는 내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김영근 등, 2012). 전문상담이 본질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이고 누구나 상담의 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담실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

많은 전문 직종에서는 전문가와 고객 사이의 성적 관계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문 직종 종사자와 고객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성적 관계는 일반적인 성적 관계와 달리 당사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Allen, 1996). 이처럼 특정한 지위나 직책으로 인해 누군가는 사회적으로 강자가 되고, 누군가는 이러한 강자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자가 되는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관계에 대해 별도의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Allen, 1996).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규정하여 신체, 정신 장애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형법 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규정은 사회적인 힘의 차이를

전제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구조적인 이유로 힘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제도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힘의 불균형은 발생한다. 내담자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찾게 된다.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는 자신의 사적이고 은밀한 삶의 경험을 개방하면서 상담사와 특별한 신뢰 관계를 맺게 되고(박외숙, 고향자, 2007), 자신의 내면세계를 개방하면서 상담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Galletly, 1993; Kagle & Giebelhausen, 1994). 따라서 상담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내담자의 일방적인 자기개방은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는 정보의 차이로 인한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다(이아람, 2019). 상담은 상담사 자체가 치료의 도구가 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김영근, 2013), 상담사에 따라 상담의 접근법, 과정, 구체적인 개입방안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이 달라지고 내담자가 이러한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이아람, 2019).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의 차이로 인해 내담자는 상담사를 전문가로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내담자의 개인적인 성향 또한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Galletly, 1993). 이러한 의존은 상담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내

담자는 상담사의 권위와 영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Kagle & Giebelhausen, 1994). 그 외에도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가 과거 자신의 삶 속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감정을 상담사에게 투사하며 발생하는 전이 현상(transference phenomenon)이 상담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기도 한다(Galletly, 1993; Moleski & Kiselica, 2005).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인 친밀감은 이처럼 상담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힘의 불균형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Coleman & Schaefer, 1986). 힘의 불균형과 의존성에 근거한 성적 접촉은 내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착취(sexual exploitation)에 해당된다(Allen, 1996). 그리고 착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동의 여부뿐 아니라 상담사가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Allen, 1996).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내담자는 애초에 상담사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지 또는 그러한 관계를 떠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자유가 없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Moleski & Kiselica, 2005).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에 의한 결과의 심각성

상담사가 자신의 힘과 권위를 악용하여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먼저 상담은 더 이상 내담자를 위한 치료적인 개입이 되지 못한다. 전문상담은 본질적으로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19; 한국상담학회 2019). 하지만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담사가 상담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위와 힘을 남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Galletly, 2004; Vasquez, 1988). 즉, 상담사는 자신의 만족감과 정서적 필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 의해 내담자를 착취하는 것이다(Galletly, 1993; Twemlow & Gabbard, 1989). 실제 상담사와 성적 접촉을 한 내담자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상담사를 돌보는 역할을 했다고 느끼기도 한다(Galletly, 1993). 이처럼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하는 상담사들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담사는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에 대해 부모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적 접촉은 부모가 아이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Galletly, 2004; Pope, 1988). 실제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한 경험이 있는 심리치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자들 스스로도 자신이 더 지배적이고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인식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과반수의 치료자가 성적 관계에서 자신들은 부모의 역할을 하였고 내담자들은 상대적으로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회고하였다(Butler & Zelen, 1977).

이처럼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은 내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Pope(1988)에 의하면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증후군은 강간, 배우자의 폭행, 근친상간, 아동학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반응과 매우 유사하였다. 이러한 피해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내담자들은 양가성(ambivalence)(Galletly,

1993; Kagle & Giebelhausen, 1994; Pope, 1988; Smith & Fitzpatrick, 1995; Stake & Oliver, 1991), 수치심(Galletly, 1993), 죄책감(Galletly, 1993; Kagle & Giebelhausen, 1994; Pope, 1988; Smith & Fitzpatrick, 1995; Stake & Oliver, 1991)을 경험할 뿐 아니라 공허감과 고립감(Pope, 1988)을 느끼기도 한다.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동반하는 정서적 불안정감을 호소하거나(Pope, 1988) 우울증 진단을 받기도 한다(Bouhoutsos, Holroyd, Lerman, Forer, & Greenberg, 1983; Kagle & Giebelhausen, 1994; Quadrio, 1996; Smith & Fitzpatrick, 1995; Stake & Oliver, 1991). 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나 악몽 또는 침투적 사고를 경험하는 인지기능의 장애를 호소하기도 한다(Pope, 1988).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내담자들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고(Bouhoutsos et al., 1983; Quadrio, 1996), 자살 위험이 증가하기도 하였다(Bouhoutsos et al., 1983; Pope, 1988; Quadrio, 1996; Stake & Oliver, 1991). 일부 내담자들은 상담사와의 성적 관계 초기에는 이를 로맨틱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인식하였지만 이후에는 이를 상처받고 착취당한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Somer & Nachmani, 2005).

상담사와 성적 관계를 맺은 내담자는 정체성 경계에 대한 혼란(Pope, 1988) 뿐만 아니라 성적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고(Kagle & Giebelhausen, 1994; Pope, 1988; Smith & Fitzpatrick, 1995; Stake & Oliver, 1991), 이 때문에 이성에 대한 불신과 성적인 관계의 손상이 야기되기도 한다(Bouhoutsos et al., 1983). 또 가족관계 또는 결혼관계 등의 친밀한 관계가 붕괴되기도 한다(Bouhoutsos et al., 1983; Quadrio, 1996). 내담자들은 동기를 상실하거나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Bouhoutsos et al.,

1983), 이 때문에 기존에 매우 기능적이었던 사람들도 일로 복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Quadrio, 1996). 이들은 억압된 분노를 호소하고(Kagle & Giebelhausen, 1994; Pope, 1988; Smith & Fitzpatrick, 1995; Stake & Oliver, 1991), 많은 경우에 성적 접촉 이후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다(Bouhoutsos et al., 1983).

뿐만 아니라 피해 내담자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 능력이 손상되기도 하는데(Pope, 1988), 상당수의 내담자들은 치료자와의 성적 관계 이후에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상담사에 대한 의심과 불신 때문에 다시 상담을 찾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Bouhoutsos et al., 1983). 또한 애초에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했던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Stake & Oliver, 1991). 결과적으로 상담사와의 성적 관계는 내담자들에게 치명적인 심리·정서적, 관계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내담자를 구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상담은 비밀유지 원칙에 기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상담 과정 중에 피해를 입은 내담자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Bouhoutsos et al., 1983). 또한 심리적으로 취약한 내담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상담사의 행동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하기를 꺼려한다(Galletly, 1993). 상담사를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 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공개될 것에 대한 두려움, 법적인 절차에서 경험하게 될 스트레스,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 등 때문에 상담사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Galletly, 1993). 이처럼 피해를 입은 내

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Bouhoutsos et al.(1983)은 1980년대부터 이미 내담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소 결

이처럼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본질적으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과 내담자의 의존성이나 전이현상이 악용되는 경우 내담자에게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담사와 성적 접촉을 한 내담자가 근친상간, 배우자 폭행, 아동학대 등의 범죄피해자와 유사한 피해를 경험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담사-내담자의 성적 접촉을 상담실 안에서 발생하는 두 성인 사이의 성적 접촉으로 여겨 상담윤리만으로 규율하기에는 그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전문상담의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상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율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피해는 커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에 관한 문제를 상담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에 대한 미국의 판례 및 법률

미국 판례 및 법률 고찰의 필요성

내담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담사로 하여금 상담사로서의 권위와 힘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및

엄격한 제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도적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전문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상담사의 법적·윤리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보다 긴 상담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상담을 법제화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법은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법원과 법률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재원, 2008).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문상담을 규율하고 있는 독립된 법률이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전문상담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김영근 등, 2012; 이상민, 2020),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입법에 대한 객관적인 가능성 및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Wilson, 2007). 뿐만 아니라 미국의 판례가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양당사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어떻게 규율하는지, 어떠한 근거를 들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을 규율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코먼로 국가인 미국과 대륙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조은향, 2008) 두 법체계의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없이 미국의 법률 규정이나 판례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상담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상담분야가 오늘날 전 세계 상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Hepner, Leong, & Chiao, 2008), 상담이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서비스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

에 미국의 법률 및 법원의 판결 내용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모든 주에서 상담사와 내담자의 성적 접촉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Wheeler & Bertram, 2015). 상담사의 성적 접촉을 불법화한다고 해서 그러한 상담사의 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사-내담자의 성적 접촉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사회가 인식하고, 당국이 이에 대해 엄벌을 할 것이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Haspel, Jorgenson, Winze, & Parsons, 1997). 미국에서는 1976년 버지니아 주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 각 주에서 전문상담을 법률로 규정하기 시작했는데(Gale & Austin, 2003), 이 당시에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에 대한 논의 또한 급증하였다(Pope, Keith-Spiegel, & Tabachnick, 1986). 따라서 미국 각 주에서 전문상담 관련 입법을 하던 당시의 판례를 검토하면서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에 대한 법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 검토하는 미국의 판례에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심리학자(psychologist)나 정신과 의사(psychiatrist), 심리치료사(psychotherapist),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등이 언급된다. 이는 전문상담사가 법적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판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입장은 오늘날의 전문상담사(professional counselor)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판례의 입장

미국 법원이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에 대해 상담사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고 그 이전까지 법원은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하는 상담사에 대한 책임 여부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다(Pope et al., 1986). 하지만 이러한 미국 법원의 입장은 197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Morra v. State Board of Examiners of Psychologists* (1973) 판결에서 캔자스 대법원은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시도한 심리학자의 자격을 박탈한 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사건에서 Morra라는 심리학자는 두 명의 여성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해 심리학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위원회는 1967년 제정된 심리학자 자격 관련 법률(Certification of Psychologists Act; K.S.A. 74-5301 이하)에 의거하여 Morra의 행위가 “비전문적 행동(unprofessional conduct)”(K.S.A. 74-5324 [d]) 및 “의무 수행 중의 태만과 부주의(negligence and wrongful actions in the performance of duties)”(K.S.A. 74-5324 [e])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규정한 윤리강령에도 위반된다고 보고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대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해 준 것이다(Morra, 212 Kan. 103, (1973)).

법원에서 치료과정 중에 발생하는 전이(transference) 현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상담사-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에 대해 검토한 판결도 있다. 예컨대, 미주리 대법원은 여성 환자에게 남편을 떠날 것을 지시하고 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정신과 의사에 대해 의료과오(malpractice)를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의사가 미리 예상하고 적절히 대처하였어야 하는 전이 현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였고, “환자가

입은 피해는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그 발생 가능성이 명확한 것”이었다고 판시하였다(*Zipkin v. Freeman*, 436 S.W.2d. 753, 761 (1968)). *Zipkin* 사건 이후에도 여러 판결에서 전이 현상을 언급하며 상담 중에 발생하는 전이 현상에 대해 상담사가 예측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예컨대 *Jerrie M. Simmons, Plaintiff-appellee, v. United States of America, Defendant-appellant*, 805 F.2d 1363 (9th Cir. 1986) 판결에서 항소 법원은 내담자인 Simmons와 성관계를 맺어 내담자의 우울, 불안, 자살 시도까지 초래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가의 관리 태만 책임을 묻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담한 임상심리학자인 Brown 박사의 표현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이 현상을 설명한다.

전이(transference) 개념이 전제하는 것은, 치료가 잘 진행되고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내담자는 마치 아이가 부모를 대하듯이 치료자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부모와 같은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긍정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쳐 내담자가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현상이다; 내담자가 자라는 과정 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모 또는 부모와 같은 인물이 가졌던 정도의 권위와 힘을 치료자가 가지고 이를 내담자에게 긍정적으로 행사해야만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료가 효과적이라면 전이 관계가 발전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내담자는 치료자를 강력하고 자비로운 부모와 같은 인물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

는 바는 비록 두 명의 성인이 치료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치료 현장에 나타나는 관계는 상징적이고 때로 의식적이지 않은 부모-자식의 관계인 것이다. (*Simmons*, 805 F.2d 1363 (9th Cir. 1986))

Brown 박사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관계가 매우 해로운 이유는 이와 같은 전이에 의한 상징적인 부모-자식 관계 때문이고,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관계는 부모가 아이에게 성적 접촉을 하는 것과 동일한 강도의 신뢰 위반이 된다고 증언하였다(*Simmons*, 805 F.2d 1363 (9th Cir. 1986)).

또 다른 판결에서도 법원은 상담 관계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상담사가 전이 현상을 예측하고 잘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내담자는 상담사가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상담사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 내담자를 착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치료 관계가 본질적으로 매우 은밀하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때때로 강렬한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임을 전제로 한다(*L. v. Medical Protective Co.*, 122 Wis. 2d 455. 460(Wis. App. 1984)). 법원은 치료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강렬한 감정들은 내담자 뿐 아니라 상담사에게도 성적인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환상을 통제할 수 있는 객관성은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인 관계는 치료 관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L.L.* 122 Wis. 2d 455. 460, 462 (Wis. App. 1984)).

이러한 이유로 미국 법원은 상담사가 전이를 잘못 처리하여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한 경우 일관성 있게 위법행위(malpractice) 또는

중과실(gross negligence)을 인정하였고, 성적 접촉은 내담자에게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e.g., *Aetna Life & Casualty Co. v. McCabe*, 556 F. Supp. 1342 (E. D. Pa. 1983); *L. v. Medical Protective Co.*, 122 Wis. 2d 455. 362 N.W.2d 174 (Wis. App. 1984); *St. Paul Fire & Marine Insurance Co. v. Mitchell*, 164 Ga. App. 215, 296 S.E.2d. 126 (1982)). 이처럼 미국 법원은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이 현상 및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의 유해한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반 하여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시도한 상담 전문가들의 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 법률 규정 내용

형사처벌

미국의 판례뿐 아니라 성문화된 법률 규정에서도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관계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주는 위스콘신으로 1983년에 상담사의 성적 접촉을 경범죄로 규정하였다(Haspel et al., 1997). 현재에는 생명과 신체 안전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Life and Bodily Security)를 규율하는 제940장에서 그 처벌을 Class F 중범죄(felony)로 강화시켰고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WI Stat § 940.22(2) (2018)).

위스콘신 이후로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내담자와의 성적 접촉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기 시작했다. 미네소타는 1984년에 내담자에 대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고, 이때 내담자의 동의 여부는 치료자의 면책사유

(defense)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Coleman & Schaefer, 1986; Haspel et al., 1997).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2018년 미네소타 형법(Minnesota Statutes Criminal Code)에 의하면 의사, 심리학자, 전문상담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치료자(psychotherapist)들이(MN Stat § 609.341 Subd.17. (2018)) 상담 중인 내담자들과 상담실 내외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제3등급 범죄(criminal sexual conduct in the third degree), 성관계 외의 성적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제4등급 범죄(criminal sexual conduct in the fourth degree)가 성립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이때 내담자의 동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MN Stat § 609.344 Subd.1(h) & Subd.2(1); § 609.345 Subd.1(h) & Subd.2 (2018)).

미네소타나 위스콘신과 같이 형사법에서 심리치료자 또는 전문상담사를 행위의 주체로 명시하여 내담자와의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주도 있지만, 형법 외에 전문상담사의 자격 및 면허 등을 규율하는 법률을 통해 내담자와의 성적 접촉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주도 있다. 예컨대 플로리다에서는 임상, 상담, 심리치료 서비스(Clinic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Services)를 규율하는 법률 제491장에서 내담자와의 성적 접촉은 금지되고(Fla. Stat. §491.0111 (2019)), 성적 접촉을 하는 상담사는 제3등급 중범죄(felony of the third degree)를 저지르는 것이며(Fla. Stat. §491.0112(1) (2019)), 내담자가 성적 접촉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가 해당 범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Fla. Stat. §491.0112(3) (2019)).

민사상 손해배상

내담자에 대한 상담사의 성적 접촉은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담사의 성적 접촉은 내담자와의 치료 관계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86년에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에서 처음으로 상담사의 성적 착취에 대한 민사상의 규정을 제정하였다(Haspel et al., 1997). 그 이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등의 순으로 민사 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Haspel et al., 1997). 예컨대 2018년 캘리포니아 민사법(CA Civ. Code §43.93(b) (2018))에 의하면 내담자가 상담을 받고 있는 도중 또는 상담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성적 접촉이 발생하거나, 상담사가 성적 접촉이 치료의 일환이라고 내담자를 속인 경우에 내담자는 상담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사소송을 통해 내담자는 상담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성적 접촉이 상담 장소 또는 상담 회기 중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CA Civ Code §43.93(c) (2018)).

면허의 취소, 정지 등

형사상의 처벌,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상담사의 자격이 제한되기도 한다. 내담자와의 성적 접촉은 상담윤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상담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당 상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워싱턴 D. C.에서는 전문상담사의 자격 등을 규정하는 법률에서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상담사에 대해서는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면허 응시자에 대해서는 면허 발급 정지를

규정하고, 민사상의 벌금 또한 부과한다고 규정한다(DC Code § 3-1205.14(c) (2018)). 아이오와에서도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상담사의 면허는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기타 법률에 의한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IA Code § 154D.5 (2018)).

소 결

미국에서 1980년대에 활발히 논의되었던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성적 접촉 문제는 상담 분야만의 윤리적 쟁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형사, 민사상의 법적 쟁점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모든 주에서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Wheeler & Bertram, 2015). 또한 형사상의 처벌 수위도 법률 제정 당시보다 높아져 내담자가 입는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 전문가 개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형사, 민사상의 처벌 뿐 아니라 상담업계의 보호를 위해 상담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법적 조치도 마련이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은 그 횟수나 강도와 상관없이 내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고 평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은 내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담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상담사에 대한 처벌 및 내담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적극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 규제에 대한 방향성

내담자와의 성적 접촉에 대한 상담사 제재 방안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이 상담 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를 규정함에 있어 그 객체 및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범죄의 객체는 “사람”(형법 제297조 및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4조 등),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형법 제299조), “피보호감독자”(형법 제303조), “신체, 정신장애자”(성폭력처벌법 제6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형법 제297조 및 제298조),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형법 제303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상담 영역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현행법은 “사람,” “피보호감독자”와 같이 일반적인 행위의 객체를 규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규정 없이는 “(상담을 받는) 내담자”와 같이 특정 대상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거나 그 대상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어렵다. 둘째, 외견상 상대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내담자의 심리적·정신적 의존을 악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상담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서두에서 살펴본 형사 판결에서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간음 또는 추행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은 위계 또는 위력의 존재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임주환, 2019). 형법

제303조 등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소속된 집단 내부의 권력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무형적 지배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폭력)범죄”로 불리는데(김태명, 2018, p. 143), 이러한 무형적 지배력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의계 또는 위력에 의해 유효하지 않은 동의로 보아야 한다(김태명, 2018). 하지만 미국에서와 같이 동의 유무가 상담사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판례는 “그루밍 성폭력”을 아동·청소년(서울고등법원 판결 2019.05.09. 2018노3445;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8.11.28. 2018고합365)이나 지적장애인(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2019.03.29. 2018고합410)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성인 피해자에 대한 그루밍 수법의 인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전문상담사에 대한 법률의 제정일 것이다. 전문상담을 법제화하려는 노력(김영근 등, 2012; 이상민, 2020)이 계속되어 전문상담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미국에서와 같이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상담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의 동의 유무가 상담사의 면책사유가 아님을 명시하여 상담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입법의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원 등의 관련 기관이 상담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힘의 불균형, 내담자의 의존성 및 전이 현상, 이를 악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상담학계에서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상담 분야에서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이 비윤리적이 자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이중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대부분 비성적(非性的)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성적인 관계는 명백히 비윤리적이고 내담자에게 해롭다는 점만을 선언하고 있다(강진령, 유형근, 2003; 박외숙, 고향자, 2007). 상담윤리에 관한 연구에서도 전문상담사가 명확한 경계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객관성이 저해되고 힘과 영향력을 남용하게 되어 내담자를 착취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나(금명자, 정상화, 이수정, 이은영, 박선민, 2018; 김화자, 2014; 최수아, 2017), 상담사-내담자 성적 관계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떠한 피해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상담윤리 관련 연구는 주로 상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오송희, 이정아, 김은하, 2016) 대부분의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성적 관계가 비윤리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금명자 등, 2018; 우홍련, 허난설, 이지향, 장유진, 2015; 최혜림, 2002) 이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상담 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전문상담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성적 접촉 관련 요인, 피해의 범위 및 심각성, 피해자의 인식 및 경험 등에 대한 국내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담자에 대한 상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상담사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6.12. 선고 2018나36937 판결; 임주환, 2019). 즉 본 판결에서 법원은 상담사에게는 내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고, 성적 관계로 인해 상담사가 그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처럼 상담사의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성적 접촉으로 인해 내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우리 민법은 서비스계약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서비스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무형이고,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에 따라 그 양상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는 저장하거나 복원하는 것이 어렵다(김중길, 2018). 따라서 상담사의 성적 접촉이 상담 서비스 자체의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또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손해는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등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이 상담사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담 계약을 통해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을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상담사의

손해배상의무를 사전에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내담자들은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상담을 찾게 되고, 상담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이 현상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담 계약 체결을 단순히 상담사와 내담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내담자에게 부당할 수 있다(이아람, 2019). 따라서 상담 자격을 관리 및 발급하는 학회 등의 기관에서 내담자와 상담사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상담 계약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아람, 2019). 이를 통해 내담자는 상담사와의 성적 관계는 금지된다는 것과 이를 위반 시 상담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고, 상담사 또한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 공인 전문상담사 자격 제도의 도입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상담사가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한 경우에 상담사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켜 상담사가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관련 위원회(board)가 제재를 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상담 관련 자격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는 그 윤리강령에서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내담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통한 징계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징계는 자격의 영구박탈이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19; 한국상담학회, 2019). 하지만 한국의 상

담 관련 자격은 국가가 규율하는 면허 또는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여 해당 상담사의 상담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민간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을 방법 또한 없다.

우선 자격(certification)과 면허(license)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격이라 함은 특정한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해 주는 방법으로서, 자격 유무가 해당 직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신용철, 2002; 하명호, 2019). 다시 말해 전문상담이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자유롭게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해줄 뿐이다. 이 때문에 내담자를 성적 착취한 상담사의 자격을 학회 차원에서 영구박탈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담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서두에서 언급한 판결에서 내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상담사가 징역 이후에 다시 상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기관에서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더라도 해당 상담사가 다른 기관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다. 2020년 1월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20)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검색되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은 4,897건,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은 2,888건, “전문상담” 관련 민간자격은 91건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고 취득 절차 또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민간자격증 제도 하에서는 상담으로의 입문 과정을 규제하거나 자격소지자들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김인규, 2018; 이상민, 2020). 이러한 이유로 현재 만연해 있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을 통합하고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자격화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김영근 등, 2012; 김인규, 2018).

반면 면허는 국민의 생명, 건강, 질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직무로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신용철, 2002). 즉 면허로 규제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특정 자격요건을 갖춰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 게만 제한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다(신용철, 2002; 하명호, 2019). 대표적인 예시가 의료인의 면허이다. 의료행위는 면허로 규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고,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가 주어진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상담이 면허 제도로 규제된다면 전문상담 서비스는 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담자와의 성적 관계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문상담사(professional counselor), 정신건강 상담사(mental health counselor), 전문 임상 상담사(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모든 주에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자에게 면허(license)를 부여하고 있다(Lee, 2018). 즉, 상담사의 자격과 직무를 법률로 규제하고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 관련 학과 전공이나 경력, 국가시험 합격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신용철, 2002). 현재 상담 관련 자격을 주관하는 대표적인 학회들은 관련 학과 및 전공 학위, 수년간의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 시험의 합격을 자격 취득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요건에 이미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 관련 자격을 주관하는 수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처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상담의 질이나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인규, 2018). 심지어 상담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민간자격도 존재한다(김인규, 장숙희, 2019).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상담을 면허제도로 규제하게 된다면 상담 입문자들에 대한 게이트키퍼(gatekeeping)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갖춘 상담사들을 배출해 내고 역량이 부족한 수련생에게 필요한 도움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교육·수련 기관 및 슈퍼바이저들의 게이트키퍼 역할인데(Bhat, 2005; Homrich, 200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담 관련 기관이나 슈퍼바이저들이 원활하게 게이트키퍼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담이 면허제도로 규제되고, 면허 취득을 위해 상담 관련 학위 및 일정 수련과 시험의 합격이 요구된다면, 상담영역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육기관과 수련기관에서 슈퍼바이저들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다. 적절한 게이트키퍼는 상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담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내담자를 보호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담

영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고(Bhat, 2005), 면허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상담은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건강과 안녕,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Lee, 2018) 이를 면허 또는 국가자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문상담 영역을 국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어야 내담자들을 보호하고 상담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 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상담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담사에 대한 제재조치나 내담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다소 미흡하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상담 과정 중에 발생하는 성적 접촉의 위해성 및 상담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 계약의 핵심 내용을 표준화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상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상담 관련 자격을 면허 또는 국가자격으로 운영하여 상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최근 상담학계 및 실무자들은 내담자를 잠재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상담사의 전문적, 윤리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

써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근래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에 대해 검토한 미국의 판례와 법률 규정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상담 영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에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그러한 학계의 논의는 미국 판례의 입장이나 상담사 관련 법률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상담사-내담자 성적 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관련 쟁점에 대해 앞서 논의를 진행했던 미국의 입장과 입법과정 검토를 통해 국내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학계와 실무자들은 법원 등 관련 국가기관이 상담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내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관계에 대한 특성 및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담사의 전문성 신장, 자격 규율의 엄격화, 내담자 보호 측면에서의 제도적 조치 등을 포괄하는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던 시점의 판례와 법률만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떠한 논의를 거쳐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지, 또 현재에는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전문상담

을 규율하는 법이 없을 뿐 아니라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에 대한 판결 또한 누적되어 있지 않아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추후 다른 국가의 예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상담에 대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관점에서의 논의를 병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담사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 외에도 상담실 영업과 관련하여 신고에서 허가로의 변경, 수퍼바이저 또는 소속 기관의 책임, 성적 접촉에 대해 알게 된 타상담사의 신고의무 등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상담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피해를 입은 내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상담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령, 유형근 (2003). 학교상담에서의 비성적(非性的) 이중관계 문제와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4(4), 831-843.
- 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전문상담사의 국가자격화 논의를 위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4), 9-29.
- 금명자, 정상화, 이수정, 이은영, 박선민 (2018). 상담의 이중관계에 대한 잠재적 내담자의 윤리인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255-255. 8월 16일.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 김영근 (2013). 치료적 요인으로서의 상담자 요인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03-226.
-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41-670.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 김인규, 장숙희 (2019). 국내 상담관련 민간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교육종합연구*, 17(2), 43-61.
- 김재원 (2008). 미국 法源에의 체계적 접근. *성균관법학*, 20(2), 675-695.
- 김준호 (2018). 채권법. *법문사*.
- 김중길 (2018). 서비스제공자의 민사적 책임구조: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35(1), 261-293.
- 김태명 (2018).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 간음추행죄의 도입. *법학연구* 57, 137-163.
- 김화자 (2014). 한국과 미국의 상담윤리규정 비교 연구. *복음과 상담*, 22(1), 9-50.
- 남은주 (2016, 3, 14). 정신적 약점 이용해 ‘성폭력’... 법규 없어 처벌도 못해.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901.html 에서 검색.
- 박외숙, 고향자 (2007). 비성적(非性的)인 이중관계의 윤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863-887.
- 박지윤 (2019, 5, 22). 심리상담사의 기괴한 요구 “속옷 벗고 성기 그림 그려라”. *한국일보*.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01249729715?did=NA&dtype=&dtypecode=&prnewsid=> 에서 검색.
- 신용철 (2002). 자격과 면허의 비교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오송희, 이정아, 김은하 (2016). 상담윤리(counseling ethics)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267-289.
- 우흥련, 허난설, 이지향, 장유진 (2015). 한국 상담자들이 경험한 윤리 문제와 대처 방법 및 상담 윤리 교육에 관한 실태 연구. 상담학연구, 16(2), 1-25.
- 유주성 (2016).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대법원 2015.8.27. 2014도8722 판결. 비교형사법연구, 18(1), 33-60.
- 유지혜 (2019, 11, 13).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 해주겠다며 성폭행한 상담사.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113506465> 에서 검색.
- 이상민 (2020).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547-557.
- 이아람 (2019). 상담사-내담자 계약관계에서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303-324.
- 임주환 (2019). 심리상담 내담자 법적 보호 현실. 제3회 상담정책 포럼: 심리상담 법령 없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8월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미간행.
- 조경건 (2020, 4, 2). ‘성폭력 피해 여성 성폭행’ 유명 심리상담사,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부산닷컴.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40210482738556> 에서 검색.
- 조은향 (2008). 미국법 이해. 법문사.
- 최수아 (2017). 상담에서의 전문가 윤리와 경계문제. 인문사회 21 8(2), 1235-1254.
- 최해림 (2002). 한국 상담자의 상담윤리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05-828.
- 하명호 (2019). 행정법. 박영사.
- 한국상담심리학회 (2019).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http://www.krcpa.or.kr/sub01_5.asp?menuCategory=1 에서 검색.
- 한국상담학회 (2019).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http://www.counselors.or.kr/> 에서 검색.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https://www.pqi.or.kr/inf/ql/infQulList.do?searchQulCpCd=0001> 에서 검색.
- Allen, T. (1996). Civil liability for sexual exploitation in professional relationships. *The Modern Law Review*, 59(1), 56-77.
- Bhat, C. S. (2005). Enhancing counseling gatekeeping with performance appraisal protocol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7(3), 399-411.
- Bouhoutsos, J., Holroyd, J., Lerman, H., Forer, B., & Greenberg, M. (1983). Sexual intimacy between psychotherapists and patien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2), 185-196.
- Butler, S., & Zelen, S. L. (1977). Sexual intimacies between therapists and patient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4(2), 139-145.
-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2019).

- Therapy never includes sexual behavior.*
Sacramento, CA: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 Coleman, E., & Schaefer, S. (1986). Boundaries of sex and intimacy between client and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5), 341-344.
- Gale, A. U., & Austin, B. D. (2003). Professionalism's challenges to professional counselors' collective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1), 3-10.
- Galletly C. A. (1993). Psychiatrist-patient sexual relationships: The ethical dilemma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7*(1), 133-139.
- Galletly, C. A. (2004). Crossing professional boundaries in medicine: The slippery slope to patient sexual exploitation.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81*(7), 380-383.
- Haspel, K. C., Jorgenson, L. M., Wincze, J. P., & Parsons, J. P. (1997). Legislative intervention regarding therapist sexual misconduct: An ov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8*(1), 63-72.
- Heppner, P. P., Leong, F. T. L., & Chiao, H. (2008). A growing internationalization of counseling psychology.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68-85). Hoboken, NJ: Wiley.
- Homrich, A. M. (2009). Gatekeeping for personal and professional competence in graduate counseling programs. *Counseling and Human Development, 41*(7), 1-24.
- Kagle, J. D., & Giebelhausen, P. N. (1994). Dual relationships and professional boundaries. *Social Work, 39*(2), 213-220.
- Lee, A. (2018). *Comparative study of the legal provisions regarding the counseling profession in the US and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Moleski, S. M., & Kiselica, M. S. (2005). Dual relationships: A continuum ranging from the destructive to the therapeutic.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3*(1), 3-11.
- Pope, K. S. (1988). How clients are harmed by sexual contact with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he syndrome and its preval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4), 222-226.
- Pope, K. S., Keith-Spiegel, P., & Tabachnick, B. C. (1986). Sexual attraction to clients: The human therapist and the (sometimes) inhuman training system. *American Psychologist, 41*(2), 147-158.
- Quadrio, C. (1996). Sexual abuse in therapy: Gender issu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0*(1), 124-131.
- Smith, D., & Fitzpatrick, M. (1995). Patient-therapist boundary issues: An integrative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6*(5), 499-506.
- Somer, E., & Nachmani, I. (2005). Constructions of therapist-client sex: A comparative analysis of retrospective victim reports. *Sex Abuse, 17*(1), 47-62.
- Stake, J. E., & Oliver, J. (1991). Sexual contact and touching between therapist and client: A survey of psychologists' attitudes and behavior.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 22(4), 297-307.
- Twemlow, S. W., & Gabbard, G. O. (1989). The lovesick therapist. In G. O. Gabbard (Eds.), *Sexual exploitation in professional relationships* (pp. 71-8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Vasquez, M. J. T. (1988). Counselor-client sexual contact: Implications for ethics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4), 238-241.
- Wheeler, A. M., & Bertram, B. (2015). *The counselor and the law: A guide to legal and ethical practice*.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Wilson, G. (2007). Comparative legal scholarship. In M. McConville & W. H. Chui (Eds.), *Research methods for law* (pp. 87-103).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20. 01. 08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6. 24
계 재 결 정 일 : 2020. 07. 09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Sexual Contact between Counselors and Clients

Ahram Lee

Sejong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 Assista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s for protection of clients and sanctions against counselors who engage in counselor-client sexual contact. To assist courts and investigating authorities, the specificity of counseling relationships, imbalance of power, and harmful effects of counselor-client sexual contact are presented. The study also examined the precedents and stipulations in the US, in which active discussions were held in the 1980s regarding sexual contact by counselors. Specifically, the US courts have confirmed that a counselor-client relationship represents a symbolic parent-child relationship due to the transference phenomenon, and that sexual relations with counselors cause devastating damage to clients. Moreover, the US provisions stipulate criminal punishment, civil liability, and revocation or suspension of licensure for counselors who sexually exploit their clients. Implications are proposed for the counseling field in Korea regarding sanctions against counselors, compensation for clients, and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counseling certification system.

Key words : *counselor-client sexual contact, US case law, US state law, protection of clients, sanctions against counselors*